

충청북도 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7. 12. 22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7년 12월 3일

· 회부일자 : 1997년 12월 3일

다. 상정일자 : 제143회 정기회

· 제9차 내무위원회(1997. 12. 22)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가. 제안이유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조성 관련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금조성에 관한 일부 조문정비(안 제2조 2호)
 - "청소년육성 지방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 조항 삭제

- 현 운용실태와 부합되지 않는 기금관리 조문정리(안 제4조 1항)
 -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관리하되” 조항 삭제
- 기금 예탁기관 관련 조문정비(안 제4조 2항)
 -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 을 “도금고” 로 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오 건 영)

충청북도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상위 법령에 맞게 기금조성의 재원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조성 재원중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과 기금관리의 세입세출의 현금구좌 관리 조문은 삭제하였고 기금예탁 관리에 있어서도 도금고의 고율 금융상품으로 하여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